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72
----------	-------

발의연월일 : 2026. 4. 13.

발 의 자 : 조은희 · 신성범 · 이인선
서천호 · 이성권 · 김용태
윤상현 · 박정하 · 김소희
조지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사 양성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매년 신규 인력을 양성하고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아이돌봄사의 처우 개선 및 심리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고질적인 인력 이탈이 발생하고 있음. 실제 2024년 2,433명(8.4%)의 퇴사로 인해 이용 가구 대기기간이 27.7일에 이르는 등 적기 돌봄에 차질을 빚고 있는바, 종사자의 감정노동을 해소할 심리 지원과 숙련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 수단 마련이 시급함.

이에 광역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아이돌봄사 심리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근속기간·근로시간을 고려한 장기근속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아이돌봄사의 처우 개선 및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민

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2항제5호의2 및 제18조의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아이돌봄사 심리상담·치료 지원

제3장에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아이돌봄사 장기근속수당) ① 광역지원센터 및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장기근속 경력이 있는 아이돌봄사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한 기준은 아이돌봄사의 근속기간과 근속기간 동안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봄사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광역지원센터 및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그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p> <p>① (생 략)</p> <p>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 5. (생 략)</p> <p><u><신 설></u></p> <p>6. (생 략)</p> <p>③ ~ ⑤ (생 략)</p> <p><u><신 설></u></p>	<p>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5의2. 아이돌봄사 심리상담 · 치료 지원</u></p> <p>6.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u>제18조의3(아이돌봄사 장기근속수당) ① 광역지원센터 및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장기근속 경력이 있는 아이돌봄사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한 기준은 아이돌봄사의 근속기간과 근속기간 동안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u></p> <p><u>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봄사의 장기근속을 장려하</u></p>

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장기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광역지원
센터 및 등록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그 장기근
속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